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(안도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955

발의연월일: 2024. 10. 28.

발 의 자: 안도걸·박홍배·양부남

조인철 • 전진숙 • 강유정

정일영 · 강준현 · 위성곤

정진욱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얻은 후 국회 심의·의결을 거치도록 하되, 예외적으로 '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'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의 심의·의결 없이 정부 내에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자체 변경할 수 있음. 또한 금융성 기금과 비금융성 기금의 경우 각각 30%와 20% 이내의 범위에서는 이러한 자체 변경이 허용되고있음.

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산 대비 9조 5,927억원을 일반회계에 추가로 예탁했으며, 예산에 따라해당 기금에 상환하여야 할 예수이자 중 8조 5,787억원을 미지급함으로써 일반회계 지출을 절감하여 세수결손에 대응한 것이 확인되었음.

한편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으로부터 예산에 따라 49조 8,018억원의 예수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상환하여야 하나,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추가적으로 14조 4,000억원(예산 대비 28.9%)을 국회의 심의·의결 없이 조기 상환한 것으로 확인되었음.

외국환평형기금은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으로 예산 대비 20% 이내의 범위에서만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데, 2023회계연도에 발생한 예수금 조기 상환이 금액 제한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인 '차입금 원리금의 기한 전 상환'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는 의견이 있어,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

이에 예수금의 조기 상환이 국회의 심의·의결 없이 지출금액 자체 변경이 허용되는 차입금의 기한 전 상환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규정함 으로써 정부의 기금운용계획 임의 변경 행위를 통제하려는 것임(안 제 70조제3항제4호다목). 법률 제 호

##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0조제3항제4호다목 중 "차입금"을 "차입금(기금의 예수금은 제외한다)"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) 제70조제3항제4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	제70조(기금운용계획의 변경) ①
•② (생 략)	· ② (현행과 같음)
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	3
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	
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	
할 수 있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	4
해당하는 지출금액	
가.•나. (생 략)	가.・나. (현행과 같음)
다. 환율 및 금리의 변동, 기	다
한 전 상환으로 인한 <u>차입</u>	<u>차입</u>
<u>금</u>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	금(기금의 예수금은 제외
	한다)
5.・6. (생략)	5.・6. (현행과 같음)
④ ~ ⑦ (생 략)	④ ~ ⑦ (현행과 같음)